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년 7월 6일

나. 제 출 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6년 7월 6일

라. 상정일자: 2026년 7월 21일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사회복지국장 이 정 화

나. 제안이유

-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의 근로 연계를 통해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사 무 명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 2)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다)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라)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3) 위탁사무

- 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리
나) 참여자 직무 배치, 사업운영 전반

4)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 2027. 1. ~ 2029. 12.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16,084천원 * 2027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계	인건비	퇴직금	운영비	비 고
216,084	178,464	17,028	20,592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7)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8) 부서의견

가)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시각장애인안마사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의 특성상 관련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므로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이에 장애인일자리 채용 및 채용인력 관리, 자원 연계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2)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창 곤

○ 본 동의안은

- 시각장애인의 근로 연계를 통해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안마사 자격 확인, 수요처(경로당 등) 발굴 및 매칭 등 시각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 타당함.
- 저조한 예산 집행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낮게 평가되고 감사 결과 3건의 지적사항(시정 2, 계도 1)이 발생한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회계처리와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을 통한 예산 집행을 제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또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처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대상 직무 역량 강화 및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가 수반되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 론 요 지: 없 음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